

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운영 계획서

2021. 4. 27.

동국대학교(서울캠퍼스)

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

- 2021학년도 재학 중인 자
 - 2021.05월~2021.08월 근로장학생 : 2021-1학기 재학 중인 자
 - 2021.09월 근로장학생 : 2021-2학기 재학 중인 자
-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자(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동일)

□ 교내 근로

- 선발기준 : 배점방식
 - 해당 근로지 신청자 중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.
 - 선발 시 아래 배점표에 따라 선발되며,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
 - 배점항목

배점점수	30점	20점	50점
배점항목	학자금 지원구간	직전학기 성적	면접

- 배점점수표

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		직전학기 성적 환산점수	
구분	배점	구분	배점
0~1구간	30	100 ~ 90이상	20
2~3구간	25	90미만 ~ 85이상	15
4~5구간	20	85미만 ~ 80이상	10
6~8구간	15	80미만 ~ 75이상	5
9~10구간/미확인	10	75미만 ~ 70이상	0

- 대체장학생 선발기준
 -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
 - 특별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

□ 교외근로 : 일반 교내 근로 선발기준과 동일

2.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

- 특별근로장학생 활동관리
 - (사전교육) 각 기관별/부서별 자체 사전교육 실시
 - (간담회) 각 기관별/부서별 자체 간담회 실시
- 특별근로장학생 자격 관리
 - 각 기관별/부서별 장학생 선발 후 학교담당자 최종 점검하여 재단포털 등록
 -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 시 특별근로진행 불가하며,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하고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.
 - 부정근로 적발시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의 부정근로 조치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해제

부정근로에 대한 조치

1. 특별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

◆(허위근로)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

☞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장학생 참여 제한

-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
-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-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

◆(대리근로)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

☞ 특별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특별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장학생 참여 제한

-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

◆(대체근로)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

☞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
- 10:00~11:00(1시간) 근로를 실시하였으나, 13:00~14: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

※ 특별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(객관적 근거제시 필요) 및 부정근로 자진신고* 시 제재대상에서 제외가능

* 부정근로의 주체(특별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)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신고한 경우, 해당 주체를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※ 특별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, 특별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

□ 근로기관 자격 관리

- 관리부실기관(출근부 제출 지연, 부정근로 발생 등)은 배정인원 회수
- 매월 특별근로장학 담당자에게 안내문 발송

□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- 근로활동 익월 16일이내(휴일인 경우 다음날) 본인계좌 장학금 지급
-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일을 사전 안내 후 지급